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춘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7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임춘대,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규정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도시형·소규모 농업 현장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고령 농업인·근로자 등의 사고 질병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기계 전복·추락·온열질환 등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성 진단·개선, 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통합적 예방·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를 근거로 한 각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 문서 확인결과 이는 기추진사업¹⁾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민생노동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① 서울시 민생노동국 2025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 6,000천원

-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 자료 제작 및 보급

② 서울시 민생노동국 2025년 <농업 재해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 : 100,000천원

-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일부지원

③ 서울시 민생노동국 2025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50,000천원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활용 등 기계적·물질적 안전조치